



## 중앙방역대책본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3-1판 개정 안내

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관련 귀 기관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2.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」 제13-1판을 송부하오니, 업무 시 적극 활용하여 감염예방 및 전파차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**실무 연락처**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의 해당 지침 게시판에 별도 첨부할 예정이며, **별도 서식**은 한글(HWP) 양식으로 추가 첨부하오니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

### <주요 개정 사항>

- ① (사례정의)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기간 연장 및 PCR 검사 우선순위 중 시행 대상 현행화
  - 신속항원검사 인정기간 : '22.3.14 ~ '22.5.13 → '22.3.14 ~ **별도 안내시 까지**
  - PCR 검사 우선순위 현행화 : 외국인보호시설, 교정시설, 입영 장정, 감염취약시설 등
- ② (해외입국자 관리방안) 입국 후 대응절차, 무증상·경증 확진자 병상배정 원칙(공항) 등 현행화
  - **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**, 10일간 수동 감시, 입국 후 신속항원검사 권고
  - **임시생활시설, 생활치료센터 등 운영 중단에 따라 재택치료** 원칙 적용(단기 체류 외국인 전용 생활치료센터 1개소 운영 유지)
- ③ (확진환자 대응방안) 초기분류 및 병상배정 기준, 재검출 사례 인정 기준(신속항원검사) 및 감염취약시설(3종) 상세화
- ④ (실험실 검사 관리)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칭 일원화, 검사 오류 의심 시 조치사항 추가(인권위 권고)
  - (기존) 호흡기전담클리닉,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등 → (개정) **호흡기환자진료센터**
  - **검체 채취·취급·검사 과정 중 오류가 발생**하여 검사 결과가 잘못 판정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기관별 역할 및 절차·방법 추가
- ⑤ (기타)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,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변경,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절차 등 현행화

※ 시행일: 2022.8.15.

- 붙임 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3-1판 1부.  
2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3-1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.  
3. (서식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3판 1부. 끝.

중앙방역대책본부장



수신자 모든 기관, 시도, 시군구, 학협회

역학조사관

김동섭

서기관

전결 2022. 8. 12.

최호용

협조자

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-24981 (2022. 8. 12.)

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/ <http://www.kdca.go.kr>

전화번호 043-719-9365 팩스번호 043-719-9469 / [emt8193@korea.kr](mailto:emt8193@korea.kr) / 대국민 공개

질병정보 공금할때,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